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-831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6월 22일

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 1. 개정이유

- 안전 유형별,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 횟수 규정
-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 중복 위촉을 제한, 횟수를 규정
-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
-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

## 2. 주요내용

- 안전처리는 안전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,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
-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음

- 위원 위촉 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.07.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도시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 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 032-560-4763, FAX 032-560-2774 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